

서울특별시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이숙자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788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5월 26일

발 의 자: 이숙자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고광민, 김규남,
김영철, 김용호, 김원중,
김원태, 김재진, 김지향,
김춘곤, 김태수, 김혜영,
남궁역, 남창진, 문성호,
유만희, 윤기섭, 윤종복,
이봉준, 이상욱, 이성배,
이종태, 이종환, 임춘대,
최민규, 황철규 의원(26
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의회는 자치법규의 제·개정 및 의회 관련 법률 쟁점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를 입법·법률고문으로 위촉하여 운영중임.
- 그러나 최근 서울시는 매년 약 1.3%씩 증가하는 특허출원 등에 맞춰 지식재산권 창출을 통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어, 향후 자치법규 제·개정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등 기술적 법률 검토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.
- 따라서 현행 법률 전문가 중심의 입법·법률 고문만으로는 기술과 법률이 융합된 쟁점에 대한 자문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입법·법률 고문의 다양성 및 기술 분야의 검토 역량을 강화하고자 변리사를 포함하여 운영되도록 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입법·법률고문 위촉 대상에 변리사를 규정함(안 제4조제1항제2호)

3. 참고사항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대한변리사회에 등록한 변리사

제10조 중 “「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」을 준용한다”를 “「서울특별시의회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위촉) ① 입법·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. 1. (생략) <신설> 3. (생략) 4. (생략) ②~③ (생략)	제4조(위촉) ①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<u>대한변리사회에 등록된 변리사</u> 3. (현행 제2호와 같음) 4. (현행 제3호와 같음) ②~③ (현행과 같음)
제10조(소송수임료 등) 입법·법률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「서울특별시 소송사 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」을 준 용한다.	제10조(소송수임료 등) ----- ----- ----- 「서울특별시의회 소송 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다.

서울특별시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(위촉)제1항제2호에 “대한변리사회에 등록된 변리사”를 추가하여 입법·법률 고문의 다양성 및 기술 분야의 검토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[참고] 2025년도 입법·법률고문 운영 관련 분야별 예산 내역

사업명	예산액(천원)
의회 입법, 법률 고문 운영	163,340

※자료: 2025 서울시 예산서(의회사무처)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 주병준
추계세제팀장 김중헌
추 계 분 석 관 김지혜
☎ 02-2180-7952
e-mail : kjh0123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